안산대학교	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자문위원회 규정	규정번호	4-1-3
		제정일자	2018.01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산학협력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기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 예.결산에 관한 심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
2. 규탁기관 발전을 위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수탁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수탁기관의 요청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수탁기관자문위원회와 보육수탁기관자문위원회를 둔다.

1. 각 위원회는 안산대학교 총장, 산학협력단장, 자문교수2인, 수탁기관장으로 구성한다.
2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수탁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.
3.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, 자문위원은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각 위원의 임기는 수탁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.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운영) 수탁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탁기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